

 신안산대학교	외국대학과의 교환학생 학점인정에 관한 규정	규정 번호	2-4-14
		제정 일자	2015. 12. 1.
		개정 일자	2024.3.20.
		책임부서/팀·계	교무처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신안산대학교와 외국대학간의 체결된 협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교환학생 학점인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 <2019.11.14. 개정>

제2조(용어의 정의)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.

1. “외국대학”이라 함은 신안산대학교(이하 ‘본 대학교’라 함)과 학점교류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 외국의 2년제 이상의 정규대학을 말한다.

2. “교환학생”이라 함은 본 대학 재학생이 외국대학과 체결한 협정에 따라 소정의 절차에 의하여 외국대학에 가서 수강하는 학생을 말한다. <2019.11.14. 개정>

제3조(수학기間) ① 교환학생의 수학기間은 한 학기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.

② 본 대학 학생이 교환학생으로 선발되어 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기간은 본 대학에 재학하는 것으로 인정한다. 다만, 본 대학에 등록금을 미납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

③ 교환학생은 외국대학에서 수학기間 동안 질병, 사고, 병역의무 등 부득이 하게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휴학할 수 없다.

제4조(학점인정) <삭제>교환학생이 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에 대하여 본 대학의 교육과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학점을 인정한다. <2019.11.14. 개정>

1.외국대학에서 이수한 교과목의 인정여부는 소속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소속 학과장이 판정한다. 단, 교과목의 유사성이 없을 시 학점을 인정 하지 않을 수 있다.

2.외국대학에서 취득한 학점은 학기당 20학점까지 인정 할 수 있다.

3.국제교류협력원은 외국대학에서 수학하는 자의 성적인정과 관련하여 해당 학기 학점인정의 대상이 되는 교환학생 명단을 최소 학기 시작 후 4주 이내에 교무처로 통지하여야 한다. <개정 2023. 3. 30.,2024.3.20.>

4.외국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해당학년 해당 학기에 본 대학에 개설된 전공필수, 전공선택 과목으로 대체하여 인정할 수 있다. 단, 재수강 과목시 취득가능 최고 성적은 A°로 제한 한다.

5.외국에서 이수한 교과목은 본 대학의 교과목으로 인정하며, 성적평점은 본 대학 기준으로 환산하여 인정하고 F학점도 산입한다.

제5조(학점인정 신청) ① 외국대학에서 수학한 학생은 외국대학에서 취득한 성적(학점)이 기록된 성적증명서 원본과 수학대학에서 발행한 과목 개요서(Course Description) 및 성적 평점 환산 기준표를 소속 학과 학과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
② 소속 학과 학과장은 학생이 제출한 성적증명서에 의거하여 교환연수 학점 인정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.<개정 2023. 3. 30., 2024.3.20.>

제6조(준용규정) 이 규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본 대학 학칙, 학칙시행세칙 및 학사관련 규정을 준용한다.

부 칙

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1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3년 3월 30일부터 시행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24년 3월 20일부터 시행한다.